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8

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:고민정・신장식・천하람

박홍근 • 한병도 • 이정문

김남희 · 윤건영 · 서미화

노종면 · 송옥주 · 김 현

허 영・황정아・박민규

조인철 • 박용갑 • 김한규

김종민 · 한창민 · 김영배

강준현 • 이해민 • 김승원

김원이 · 홍기원 · 박균택

정동영 · 용혜인 · 위성곤

윤후덕 · 손명수 · 이원택

임미애·복기왕·김주영

박희승 • 모경종 • 박지원

전종덕 · 조승래 · 오세희

민형배 • 김남근 • 이해식

전진숙 • 박정현 • 서영석

양부남 • 문진석 • 정진욱

전현희 · 소병훈 · 이기헌

송재봉 • 정혜경 • 이재관

김우영 · 김용만 · 문금주

이연희 • 박수현 • 이정헌

윤종오·위성락·조계원

황명선 · 문대림 · 강유정 이광희 · 정태호 · 박선원 박해철 · 김태년 · 한정애 정준호 · 이성윤 의원 (7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·자율 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 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,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,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 대하며,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 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 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 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9조, 제13조,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교육발전,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"를 "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에서"를 "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 원회에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임명한다"를 "임명하되,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"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9명"을 "2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하며, 같은 조에 제4항·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

한다.

-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3.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 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
 -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
 - 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
 - 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
-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. 이경우 성별로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6.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

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.

⑨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 여야 한다.

다만,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사장·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

5의3. 제14조의2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구성과 운영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
- ④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가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호 중 "사장ㆍ이사"를 "이사"로 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국교육방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국교육방 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 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, 교육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의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9조(임원) ① (생 략) 제9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 ② -----제13조에 따른 이사 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-----를 받아 임명한다. ③ -----이사회의 제청으로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. 방송통신위원회에서-----. ④ -----임명하되,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.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 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-----21 명 ---구성한다.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|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 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하다.

-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 위원회가 임명한다.
 -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<u>추천하는 사람 5</u> 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 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 추 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 야 하고.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 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 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 천하는 사람 3명. 이 경우 성 별로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3.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 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 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.
 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 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 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

<신 설>

④·⑤ (생 략)

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<u>단</u>서 신설>

<신 설>

- <u>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</u> 천 2명
-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1명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6.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<u>⑤</u>·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)

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

<u><신 설></u>

⑦ ~ ⑨ (생 략)

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6. ~ 12. (생 략) ② (생 략) <신 설>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임명제청한다.

⑨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
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
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
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
 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⑩ ~ ⑫ (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)

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 5의2.
 사장・감사의 임명제청

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

5의3. 제14조의2의 사장후보추 천국민위원회 구성과 운영

6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2(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

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추보 추천국민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 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 하여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 야 하며,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 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- ④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 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 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